|  |  |  |
| --- | --- | --- |
| **공상 인정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8호  신규 개정한 《공상 인정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56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공상 인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2010년 12월 31일  **제1조**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상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인정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산업재해 인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편의토록 하여야 하며, 인정절차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종업원이 사고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직업병 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을 받았을 경우 그 소속단위는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역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고 신청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속지 원칙에 따라 사용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단위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에 산업재해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근친족, 노동조합은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 시에는 《공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 고용계약서 복사본 또는 사용단위와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기타 증명자료  (2) 의료기관이 제시한, 상해를 입은 후의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  **제7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요구에 부합되고 사회보험행정부서의 관할범위에 속하며, 아울러 수리 기한 이내인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마땅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자료가 완비한 경우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료가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일괄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정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 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조사 확인을 실시 시에는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무 집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은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할 때 아래의 조사 확인업무를 할 수 있다.  (1) 업무의 필요에 따라 유관단위와 사고현장에 진입  (2)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하고 유관인원에게 질문하는 동시에 조사기록을 작성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또는 복제. 조사 확인업무의 증거 수집은 행정소송 증거수집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조사 확인을 실시할 때 유관단위와 개인은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단위, 노동조합, 의료기관 및 유관부서는 마땅히 관련인원을 안배하여 업무를 협조하게 하고 상황과 증명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업무를 실시할 때 신청인이 제공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가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와 서식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증거를 제시한 부서에 다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통합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유관부서에 조사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은 조사 확인 시 아래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유관단위의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  (2) 정황을 제공한 관련인원의 비밀을 유지.  **제16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업원 또는 그 근친족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고 사용단위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단위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사용단위가 입증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제공한 증거 또는 조사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다.  **제1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단위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상해 부위, 사고일시 및 진단일자 또는 직업병 명칭, 상해 경과 및 조사확인 상황, 의료구급의 기본상황과 진단결론  (4) 산업재해의 인정 또는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의거  (5)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기한  (6)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한.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단위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의거  (4)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기한  (5)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한.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와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 인정 전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산업재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사법기관이나 유관 행정부서의 결론을 의거로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 또는 유관 행정부관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 기간에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리는 기한이 중지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2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해를 입은 종업원(또는 그 근친족)과 사용단위에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와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의 송달은 민사 법률 중 송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종업원 또는 그 근친족, 사용단위가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관련 자료를 5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사고 상해 조사확인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26조** 이 방법에서의 《산업재해 인정신청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불수리 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의 양식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공상 인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工伤认定办法**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8号  　　新修订的《工伤认定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56次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1月1日起施行。劳动和社会保障部2003年9月23日颁布的《工伤认定办法》同时废止。  　　　　　　　　　　　　　　　　　　　　　　　　二○一○年十二月三十一日    **第一条**　为规范工伤认定程序，依法进行工伤认定，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工伤保险条例》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社会保险行政部门进行工伤认定按照本办法执行。  **第三条**　工伤认定应当客观公正、简捷方便，认定程序应当向社会公开。  **第四条**　职工发生事故伤害或者按照职业病防治法规定被诊断、鉴定为职业病，所在单位应当自事故伤害发生之日或者被诊断、鉴定为职业病之日起30日内，向统筹地区社会保险行政部门提出工伤认定申请。遇有特殊情况，经报社会保险行政部门同意，申请时限可以适当延长。  　　按照前款规定应当向省级社会保险行政部门提出工伤认定申请的，根据属地原则应当向用人单位所在地设区的市级社会保险行政部门提出。  **第五条**　用人单位未在规定的时限内提出工伤认定申请的，受伤害职工或者其近亲属、工会组织在事故伤害发生之日或者被诊断、鉴定为职业病之日起1年内，可以直接按照本办法第四条规定提出工伤认定申请。  **第六条**　提出工伤认定申请应当填写《工伤认定申请表》，并提交下列材料：  　　（一）劳动、聘用合同文本复印件或者与用人单位存在劳动关系（包括事实劳动关系）、人事关系的其他证明材料；  　　（二）医疗机构出具的受伤后诊断证明书或者职业病诊断证明书（或者职业病诊断鉴定书）。  **第七条**　工伤认定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符合要求，属于社会保险行政部门管辖范围且在受理时限内的，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受理。  **第八条**　社会保险行政部门收到工伤认定申请后，应当在15日内对申请人提交的材料进行审核，材料完整的，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的决定；材料不完整的，应当以书面形式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材料。社会保险行政部门收到申请人提交的全部补正材料后，应当在15日内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的决定。  　　社会保险行政部门决定受理的，应当出具《工伤认定申请受理决定书》；决定不予受理的，应当出具《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  **第九条**　社会保险行政部门受理工伤认定申请后，可以根据需要对申请人提供的证据进行调查核实。  **第十条**　社会保险行政部门进行调查核实，应当由两名以上工作人员共同进行，并出示执行公务的证件。  **第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在工伤认定中，可以进行以下调查核实工作：  　　（一）根据工作需要，进入有关单位和事故现场；  　　（二）依法查阅与工伤认定有关的资料，询问有关人员并作出调查笔录；  　　（三）记录、录音、录像和复制与工伤认定有关的资料。调查核实工作的证据收集参照行政诉讼证据收集的有关规定执行。  **第十二条**　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进行调查核实时，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协助。用人单位、工会组织、医疗机构以及有关部门应当负责安排相关人员配合工作，据实提供情况和证明材料。  **第十三条**　社会保险行政部门在进行工伤认定时，对申请人提供的符合国家有关规定的职业病诊断证明书或者职业病诊断鉴定书，不再进行调查核实。职业病诊断证明书或者职业病诊断鉴定书不符合国家规定的要求和格式的，社会保险行政部门可以要求出具证据部门重新提供。  **第十四条**　社会保险行政部门受理工伤认定申请后，可以根据工作需要，委托其他统筹地区的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相关部门进行调查核实。  **第十五条**　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进行调查核实时，应当履行下列义务：  　　（一）保守有关单位商业秘密以及个人隐私；  　　（二）为提供情况的有关人员保密。  **第十六条**　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与工伤认定申请人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第十七条**　职工或者其近亲属认为是工伤，用人单位不认为是工伤的，由该用人单位承担举证责任。用人单位拒不举证的，社会保险行政部门可以根据受伤害职工提供的证据或者调查取得的证据，依法作出工伤认定决定。  **第十八条**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自受理工伤认定申请之日起60日内作出工伤认定决定，出具《认定工伤决定书》或者《不予认定工伤决定书》。  **第十九条**　《认定工伤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用人单位全称；  　　（二）职工的姓名、性别、年龄、职业、身份证号码；  　　（三）受伤害部位、事故时间和诊断时间或职业病名称、受伤害经过和核实情况、医疗救治的基本情况和诊断结论；  　　（四）认定工伤或者视同工伤的依据；  　　（五）不服认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部门和时限；  　　（六）作出认定工伤或者视同工伤决定的时间。  　　《不予认定工伤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用人单位全称；  　　（二）职工的姓名、性别、年龄、职业、身份证号码；  　　（三）不予认定工伤或者不视同工伤的依据；  　　（四）不服认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部门和时限；  　　（五）作出不予认定工伤或者不视同工伤决定的时间。  　　《认定工伤决定书》和《不予认定工伤决定书》应当加盖社会保险行政部门工伤认定专用印章。  **第二十条**　社会保险行政部门受理工伤认定申请后，作出工伤认定决定需要以司法机关或者有关行政主管部门的结论为依据的，在司法机关或者有关行政主管部门尚未作出结论期间，作出工伤认定决定的时限中止，并书面通知申请人。  **第二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对于事实清楚、权利义务明确的工伤认定申请，应当自受理工伤认定申请之日起15日内作出工伤认定决定。  **第二十二条**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自工伤认定决定作出之日起20日内，将《认定工伤决定书》或者《不予认定工伤决定书》送达受伤害职工（或者其近亲属）和用人单位，并抄送社会保险经办机构。  　　《认定工伤决定书》和《不予认定工伤决定书》的送达参照民事法律有关送达的规定执行。  **第二十三条**　职工或者其近亲属、用人单位对不予受理决定不服或者对工伤认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二十四条**　工伤认定结束后，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将工伤认定的有关资料保存50年。  **第二十五条**　用人单位拒不协助社会保险行政部门对事故伤害进行调查核实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六条**　本办法中的《工伤认定申请表》、《工伤认定申请受理决定书》、《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认定工伤决定书》、《不予认定工伤决定书》的样式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统一制定。  **第二十七条**　本办法自2011年1月1日起施行。劳动和社会保障部2003年9月23日颁布的《工伤认定办法》同时废止。 |